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 의뢰나 신청 시 계약 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경감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정(고시)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84,240	16,848	90,450	18,090
2	78,150	15,630	83,910	16,782
3,4,5	73,800	14,760	79,240	15,848

노인요양시설 2.1 (1일당)

2.1:1	1등급	2등급	3,4,5등급	시설 비급여
31 일	90,450	83,910	79,240	0
월금액	2,803,950	2,601,210	2,456,440	이미용비
20% 본부금	560,790	520,240	491,280	0
12% 본부금	336,470	312,140	294,770	총비급여
8% 본부금	224,310	208,090	196,510	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입소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입소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입소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입소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입소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입소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입소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입소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아. 입소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입소(보호자)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